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6392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20463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63926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

변론 종결 2015. 4. 29. (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2015. 6. 19. (피고 1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7.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72,380원 및 그 중 241,671,504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2014. 9. 16.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 사이에서 2013.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2,314,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는 원고에게 172,3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2009. 4.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09. 4. 30.부터 2010. 4. 29.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015. 4. 2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 C, D은 2010.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4. 7. 3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회사는 2009. 4. 30.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4. 29.로 정하여(이후 변제기는 2015. 4. 24.로 변경되었다) 대출받았다(이하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는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4. 피고 회사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4,681m²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4. 6. 1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소외 은행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2014. 7. 8.자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7. 31.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44,337,844원(= 원금 243,000,000원 + 이자 1,337,844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2014. 7. 31. 피고 회사로부터 2,666,3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위 2,666,34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876원(= 2,666,340원 × 12% × 1/365년,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D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의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 D은 2013. 12. 10.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목동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와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9,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25865호로 피고 교회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72,380원(= 대위변제금 244,337,844원 - 회수금 2,666,340원 +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76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 원금 241,671,504원(= 244,337,844원 - 2,666,34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피고 D에 대하여 갖게 된 사전구상금 채권은 신용보증사고일인 2014. 2. 4.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09. 4. 30., 그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은 2010. 4. 28. 체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도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09. 4. 30.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그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2. 10. 당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을마 제12, 13,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구상금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2. 4. 피고 회사의 사업장 부지를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회사가 2014. 2.경 건강 및

고용보험료 등을 일시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체납분을 납부하고 2014. 9.경까지 체납 없이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다.

- ② 소외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 부지를 2014. 2. 4. 압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4. 4. 25.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기한을 2015. 4. 24.까지로 1년 연장해 주었다. 또한 위 압류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인 2014. 7. 14.에야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3. 12. 10.경 소외 은행이나 원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4. 6. 29.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소외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체 없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 ④ 피고 회사는 2011년까지 수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산은 약 5,644,000,000원, 부채는 4,995,000,000원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및 그 변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2. 10.부터 원고가 2014. 7.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실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무려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나.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도우람

판사신아름

별지